#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2021. 1.

금 융 위 원 회

## 1. 공매도 제한조치 근거 삭제 [안 제208조제4항 및 제5항]

#### 가. 제·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개정('21.1.5일)으로 한시적 시장조치로서 공매도 제한근 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종전 시행령상 공매도 제한근거 삭제

####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 개정안                    |
|------------------------|
|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③       |
|                        |
| <u>거래소</u>             |
| 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 |
| 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
|                        |
|                        |

#### 나. 제·개정 내용

- 공매도 제한조치 근거조항 삭제 (제208조제4항)
- 공매도 제한조치 근거조항 삭제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제208조제5항)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ㅇ 공매도 제한근거의 법률 상향에 따른 규범력 제고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2.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안 제208조의4)

#### 가. 제 · 개정 이유

-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면서
  -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와, 해당 기간 공매도 한 경우라도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 하도록 위임

####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 현 행   | 개정안   |
|-------|---|
| <신 설> |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누구든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해당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주식과 동일한 종목에 대해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제 · 개정 내용

- ①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다음 날부터 증자를 위해 제출한 공시서류에 기재된 발행가액 결정을 위한 기산일\*까지의 기간
  - \* (예) 통상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 주가로 하여 발행가액 산출 →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이 기산일
- ②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가

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다음의 경우

- i)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를 하고, 발행가액 결정을 위한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정규거래시 간에 매수(체결일 기준)
- ii)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 하는 법인의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유상증자에 참여
  - \* ①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②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③관련 내부관리기준 마련 등
- iii) 시장조성 및 유동성공급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래 과정에서 공매도 한 경우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액을 하락시 키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 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 방지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3.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안 제208조의5)

#### 가. 제 · 개정 이유

-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토록 하면서
- 보관해야 할 대차거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관방법을 시행령 에서 정하도록 위임

####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 현 행   | 개정안  |
|-------|--|
| <신 설> |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br>정보 보관 등)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br>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br>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br>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 |
| <신 설>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제 · 개정 내용

- ① (**보관정보**) <sup>i)</sup>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sup>ii)</sup>대차거래 확정(원계약)일시 및 결제일시, <sup>iii)</sup>대차거래 상대방, <sup>iv)</sup>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
- ② (보관방법)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음의 방법으로 보관
  - i) 계약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전자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
  - ii) 대차거래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 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보관할 것

- iii)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입력할 것
- iv)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 한다)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의 원본을 보관할 것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대차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차계약일시와 공매도 주문시기 비교를 통해 불법공매도 적발이 용이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4. 과징금 부과기준 (안 제379조제2항제1의3호 및 제1의4호)

## 가. 제 ·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위법한 공매도와,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를 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할 필요

#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 현 행   | 개정안   |
|-------|---|
| <신 설> |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 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신 설> |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         도 주문금액  |
| <신 설> |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br>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
| <신 설> | ②금융위원회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나. 제 · 개정 내용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효과 기대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5. 과태료 부과기준 (안 별표22)

#### 가. 제 ·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차거래정보 보관 의무 및 금융당국 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에서 정할 필요

#### 나. 제 · 개정 내용

o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 라. 입법효과

○ 대차거래정보 보관 및 제출 의무 이행을 통해 대차계약의 투명 성이 제고되고. 불법공매도 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

#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 바. 그 밖의 참고사항